

공동기기원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기구는 국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단 부설 공동기기원(이하 “기기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기기원은 공동기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고가의 첨단 기자재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본교의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고, 학·연·산 공동연구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

제3조(직무) 본 기기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.

- ① 기초과학 교육 및 연구용 공동기기의 선정, 도입, 유지 및 관리
- ② 교내 연구, 기자재 및 공동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
- ③ 실험분석 의뢰 및 실습교육
- ④ 고가 연구기자재의 중복 구매 방지 및 고가 공동기기 확충
- ⑤ 공동기기 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실시, 이용자와 전문 운영 요원 훈련
- ⑥ 교내 유관 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
- ⑦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공동기기의 유지·보수
- ⑧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 관련 사업
- ⑨ 기타 기기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2 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기구) 기기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- ① 원장
- ② 센터장
- ③ 운영위원회
- ④ 공동실험기기센터
- ⑤ 소프트 소자팹(K-Fab)

제5조(원장) ① 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② 원장은 기기원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센터장) ① 공동실험기기센터와 소프트 소자팹에는 원장이 임명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② 센터장은 각 센터를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공동실험기기센터) 공동실험기기센터는 나노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, 소자 및

측정, 특성분석과 해석 분야들에 대한 학·연·산 공동연구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8조(소프트 소자팹) 소프트 소자팹(이하 “K-Fab”이라 한다)은 반도체, 멤스(MEMS) 및 포토닉스(photronics) 분야의 재료, 소자 및 회로에 관한 학·연·산 공동연구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(장비 담당 교수 등) ① 기기원 하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장비의 운용과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혹은 실무 경험 3년 이상의 장비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장비 담당 직원은 기기원 하의 장비의 운용 및 관리 그리고 사용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장비 조작 교육을 담당한다.

③ 장비 담당 직원은 본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.

제10조(행정직원) 기기원의 제반 행정사무는 본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서 담당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기기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공동실험기기센터와 소프트 소자팹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소위원회는 원장과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소위원회의 위원 중 원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본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장으로 한다.

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기원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동기기 선정, 도입, 활용,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
3.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기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기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기타 기기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

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13조(재정) ① 기기원의 재정은 교비,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기기원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회계) 기기원의 회계는 본교 산학협력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장 기타

제15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기기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.

제1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산학협력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